

표 30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

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

• 기관명 : 점검일자: 20 년 월 일

항목	네	아니요	비고
1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 여부			
2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,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			
3. 도급·용역·위탁 시 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관리비용,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여부			
4. 도급·용역·위탁 시 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·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 1회 이상)			
5. 도급·용역·위탁 시 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·보건 관리 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 1회 이상)			
6. 도급·용역·위탁 시 도급·용역·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사업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(반기 1회 이상)			
7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사전에 유해·위험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, 유해·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			
8. 도급·용역·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,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종사자에게 공유			
9. 도급·용역·위탁 업무 시 유해·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,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 실시			
10. 도급·용역·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·확인			
11. 도급·용역·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			
* 바기 1회 저건			

^{*} 반기 1회 점검